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이하 “고객”)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한 중요 서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아래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본 대출상품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품입니다. 카드론은 카드를 보유한 고객의 카드사용실적과 신용도를 판단하여, 최대 얼마를 빌려줄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대출입니다. 카드론을 사용하여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이 카드론 이용에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 최대 40%의 한도가 부여되는 현금서비스와 이용한도 및 상환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카드론	현금서비스
대상	신용카드 회원	신용카드 회원
대출기간	최대 60개월	최대 2개월
금리	연 6.9% ~ 19.9%	연 7.9% ~ 19.9%
이용한도	최대 2천만원 이내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 최대 40% 부여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일시상환

□ 민원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Q1. 카드론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프로모션 등에 의한 조정금리 등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결정된 대출금리는 **대출만기일까지 변동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Q2. 대출원금과 이자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대출원금과 이자는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상환**하여야 합니다. 선택 가능한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 약정서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본 대출상품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한 상품으로 **대출계약의 연장이 불가합니다.**

Q4. 대출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무엇이 있나요?

→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러한 권리행사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약정서 및 설명서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5. 대출계약 체결 후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고객은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에 대한 청약(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약정서 및 설명서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 발생하는 불이익

Q.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대출원리금 연체 시에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금융거래가 제약되고 신용점수 등이 하락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대출원금 3천만원에 1개월 이상 연체 시 연체이자율이 8%인 경우 연체이자 197,26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체이자 : 197,260원 = 3천만원 × 8% / 365일 × 30일 (1개월 30일, 1년 365일 가정)

☐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Q. 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민원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당사 고객센터(1566-1000)**를 통해 금융상품에 관한 문의가 가능하며, **분쟁 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성

상품명	장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플러스		
적용금리	() %	대출금액	원
금리적용방식	<input type="checkbox"/> 변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정 <input type="checkbox"/> 혼합	대출기간	취급 후 개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여부 및 요율	<input type="checkbox"/> 대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대상	() %	상환방식 <input type="checkbox"/> 원리금균등분할상환 <input type="checkbox"/> 원금균등분할상환

☐ 본 대출상품은 신용카드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상품입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대출금액과 금리는 회원의 카드사용실적과 신용도를 판단하여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입니다. 카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이 카드론 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과 방식만 가능한 상품입니다.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전액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상품보다 매월 납부금액이 많습니다.

2. 금리의 변동 및 산출근거

☐ 금리의 변동 유무

- 돈을 빌리는 시점에 기준금리에 조정금리를 반영하여 약정금리가 결정됩니다. 약정금리는 실제 고객이 지불하는 이자율이며, 대출만기일까지 변동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대출만기일 이전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여 약정금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연장 등 대출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약정금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 금리의 산출근거

- 대출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목표이익률)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원가요소는 신용원가, 업무원가, 조달원가 및 자본원가 등으로 구분하여 은행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하며, 기준금리는 이러한 원가요소에 목표이익률을 감안하여 산정합니다.

(참고) 금리의 산출요소

신용원가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과거 경험과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손실과 향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을 고려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신용도가 연체 발생 또는 대출금 증가 등으로 악화되는 경우 예상손실 증가에 따른 신용원가 상승으로 대출금리 상승 가능

업무원가 :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업무수행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운영 및 영업 관련비용을 의미합니다.

조달원가 : 은행의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자금조달수단별 금리, 대출계약별 만기 등을 감안하여 산정합니다.

자본원가 :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등을 의미하며,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별로 구분된 신용위험자본율과 과거 경험치 등을 반영한 자기자본조달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됩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여부 ■ 대상 □ 비대상)

- 본 대출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카드대출상품입니다.
- 은행의 카드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소득 또는 재산증가 등으로 인한 신용평점의 상승) 은행에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시기, 횟수제한 없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4. 수수료 등 비용부담

- ※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총 금액에는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상세한 금액의 합계는 대출심사 후에 확인 가능하므로, 심사 후 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 : 해당 없음.

5. 이자 납입방법

- 이자의 납입
 - 고객님의께서는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 마다 이자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선택 가능한 납입방법 및 상환방식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출거래약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예시) 대출금액 1천2백만원, 금리 10%, 대출기간 12개월

○ 고객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상환방식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2,657,002원	1회 ~ 11회 1,054,990원 (원리금) 12회 1,052,112원 (원리금)

○ 고객이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상환방식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
원금균등분할상환	12,647,391원	1회 1,101,917원 (원리금) 2회 1,084,383원 (원리금) 3회 1,084,931원 (원리금) 4회 1,073,972원 (원리금) 5회 1,067,945원 (원리금) 6회 1,057,534원 (원리금) 7회 1,050,958원 (원리금) 8회 1,042,465원 (원리금) 9회 1,032,876원 (원리금) 10회 1,025,479원 (원리금) 11회 1,016,438원 (원리금) 12회 1,008,493원 (원리금)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납부 원리금은 결제일에 따른 이용일수를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 주요 상환방법에 따른 특성 비교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특징		
	<p>대출원금과 이자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p> <p>매월 납입하시는 상환금액이 동일하며, 이 중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p>	<p>매월 대출원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p> <p>남은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가 계산되어, 매월 납입하시는 상환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p>
유의사항	본 대출상품은 거치기간 및 만기일시상환 선택이 불가한 상품입니다.	

6.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0%로 최고 연 20.0%로 합니다.

□ 다만,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입하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 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예시) 원금 3천만원, 분할상환 원리금 매월 250만원, 약정이자율 연 6%, 연체가산이자율 연 3%인 대출의 분할상환원리금을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하고, 연체발생 후 2개월 시점에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

연체기간	연체이자 계산방법	연체이자
연체발생 ~ 1개월분	지체된 분할상환 원리금(250만원) × 연9%(6%+3%) × 1/12	18,750원
연체 1개월 ~ 2개월분	원금(3천만원) × 연9%(6%+3%) × 1/12	225,000원
계		243,750원

* 지체된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와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는 따로 계산됨.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연체이자만을 월 단위로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로, 연체이자는 대출조건, 대출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납부금액은 연체이자에 약정이자 및 분할상환 원리금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기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9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자납입연체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지 않고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대출의 제한(거부)

□ 은행의 연체대출금 보유자, 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불건전한 대출이 있는 자에 대해서 은행은 대출을 취급(연장 및 대환 포함)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의 범위

1. 은행의 본인채무 또는 보증채무가 연체중인 자
2. 특수채권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3. 신용회복지원, 회생절차, 파산·면책 등의 신청 또는 확정을 받은 자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도판단정보(기록보유자 포함)에 등록된 자
(다만, 공공정보에 등록된 자중 대출과 무관한 사유(예 : 세금체납)로 등록된 자는 제외)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

8. 대출기한 전 채무 상환이 필요한 경우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등

□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등(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9조 등에서 정한 사유)

○ 은행으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 은행의 서면청구에 의해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예) 주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경우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9. 연체정보 등의 등록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경우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 '연체정보 등'이 등록됩니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등으로 '연체정보 등'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이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금 10만원 이상' 「단기연체」한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장기연체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신용정보들은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집중, 활용됩니다.

- ①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② '연체정보 등' 정보(연체사실 등), ③ 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현황 등)

□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기록이 보관될 수 있습니다.

10.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는 신용공여,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등입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여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1. 채무조정 지원

- 고객은 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내부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 채무조정 방법(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결정·통지합니다.
 -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등은 은행 고객센터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해지에 관한 사항

- 대출계약의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출을 해지(상환)할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접 해지(상환)하거나 대출 결제계좌 또는 은행이 부여하는 가상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한 뒤 은행에 해지(상환)의사를 표시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출당일에 해지(상환)할 경우에는 1일의 정상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3.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아래와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날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서면,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식(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거절 시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14. 청약의 철회(대출계약철회권)

□ 고객은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다만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대체함)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에 대한 청약(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대출계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서면,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그에 대한 이자(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청약철회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은행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청약(대출계약)철회권 행사 시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된 정보가 삭제됩니다. 아울러 **청약(대출계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자료열람요구권

□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의 광고에 관한 자료,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금융회사는 고객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고객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금융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6.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자동화평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삭제·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말합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

□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1566-1000)**

□ **금융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17. 그 밖의 유의사항

□ 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

- 본 대출상품은 대출계약의 연장이 불가한 상품입니다.

18. 민원 및 분쟁에 관한 사항

□ 대출상품과 관련한 의문사항 또는 불편한 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citibank.co.kr)** 또는 **고객센터(1566-10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이해여부 확인을 위한 질의

□ 본 상품의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고 확인을 하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가?

- ① 예 ② 아니오

□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원리금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금융거래가 제약되며 신용점수 등이 하락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셨습니다가?

- ① 예 ② 아니오

해 당 여 부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한국씨티은행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본 설명서를 교부받았으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청약(대출계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고객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고객확인 : 20 (서명/인)		